



건강보험료 장기체납 76%가 생계형 체납 ... 8만여 명 의료 벼랑 끝 위기

- 저소득층 생계형 보험료 체납 71만 세대 中 75%는 연 소득 100만원 이하
- 8만 2,720명 건강보험 혜택 못 받아 ... 3년 6개월 이상 급여제한자도 5,294명에 달해
- 전혜숙 의원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일 막아야”

지난해 ‘수원 세 모녀’ 처럼 월 5만원도 되지 않는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못 낸 생계형 체납자가 71만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위기가구 위험 징후인 생계형 건강보험료 장기체납 세대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세대 수는 올 7월 현재 93만 1천 세대이며, 이 가운데 월 5만원 이하의 보험료를 밀린 생계형 체납은 71만 세대로 전체 체납 세대의 7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계형 체납 세대는 매년 증가 추세인데 2021년 68만 5천 세대였던 것이 2022년에는 70만 8천 세대로, 올해에는 이미 작년보다 많은 71만 세대로 확인됐다. 이들 저소득층 세대의 체납 보험료는 8,995억원으로 전체 장기 체납액 1조 5,031억원 중 60%를 차지하고 있다.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7월
세대수	68만 5천 세대	70만 8천 세대	71만 세대
체납액	9,391억원	9,607억원	8,995억원

또한, 생계형 체납 71만 세대 가운데 75%인 53만 2천 세대는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 소득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세대는 7만 4천 세대, 3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는 4만 5천 세대,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5만 5천 세대였으며, 1천만원 초과 3천 세대에 불과 했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 중 8만 2,720명은 건강보험 급여 제한으로 병·의원이나 약국에 가도 사실상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간 별로는 6개월 미만 건강보험 제한 인원이 2만 6,599명,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은 1만 5,534명, 1년 6개월 이상 2년 6개월 미만 1만 6,849명, 2년 6개월 이상 3년 6개월 미만 1만 8,444명이며, 5,294명은 3년 6개월 이상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된 기간 현황>

2023.6.30. 현재

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	1년 6개월 이상~ 2년 6개월 미만	2년 6개월 이상~ 3년 6개월 미만	3년 6개월 이상~
82,720명	26,599명	15,534명	16,849명	18,444명	5,294명

지난해 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진 ‘수원 세 모녀’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1년 6개월 체납되었다.

건강보험료가 체납되어도 의료기관 이용에는 제한이 없다. 하지만, 나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제공한 보험급여만큼 체납자에게 환수를 하기 때문에 의료비 전액을 체납자가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된 체납자는 물론 생계형 체납자의 상당 수는 심리적으로 위축돼 아파도 병원에 가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전혜숙 의원은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의료 취약계층이 늘고 있다”며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벼랑 끝 위기에 있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